

제 호

애니메이션업 신고증

1. 성명(대표자):
2. 상호(법인명):
3. 영업소의 소재지:
4. 애니메이션업의 종류:
5. 유의사항

* 대표자의 성명, 상호(법인명), 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애니메이션업의 종류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 신고증을 첨부하여 변경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.

「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애니메이션업의 신고를 했음을 증명합니다.

년 월 일

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
· 시장·군수·구청장

직인